#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89호

2.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외 23명

3. 발의일자 : 2021. 5. 28.

4. 회부일자 : 2021. 6. 2.

### Ⅱ. 제안이유

○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Ⅲ. 주요내용

- 1.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공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2.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Ⅳ.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교육관련기관의관한 특례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김생환 의원 외 23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89호로 발의되어 2021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 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9호에<sup>1)</sup> 이미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각급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개 정보가 특정업체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업 및 이윤추구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588,

<sup>1) 「</sup>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u>초·중등교육을</u>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up>1. ~ 8. (</sup>생략)

<sup>9.</sup>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sup>10. ~ 15. (</sup>생략)

② ~ ③ (생략)

2021.6.4.).

○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서는 정보공개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면서<sup>2)</sup>, "공개될 경우 특 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 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up>2) 「</su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up>1. ~ 7. (</sup>생략)

<sup>8. &</sup>lt;u>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u>되는 정보

② ~ ④ (생략)

# 관 계 법 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30.] [교육부령 제226호, 2021. 1. 29., 일부개정]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3. 11. 22., 2021. 1. 29.>
-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년 · 학급당 학생 수 및 전 · 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4. 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6. 직위, 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 7. 예 · 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보건관리 ·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2.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14. 「초、중등교육법」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붙임 1】 학생용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이 설문지는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조사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여러분들의 응답 내용은 통계분석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 본 조사는 점심급식을 대상으로만 응답해 주세요.

※ 다음 각 내용을 읽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또는 "만족하다"에 해당되는 정도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표 하여 주십시오.	5	4	3	2	1
1. 우리 학교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건강한 식사이다.					
2. 우리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하다.					
3. 우리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된다.					
4. 우리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 가정통신 통해 급식정보 제공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5. 우리 학교는 올바른 식사와 배식지도 관해 선생님이나 영양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신다.					
6. 우리학교 급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 나는 골고루 먹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					
8. 나는 음식물의 소중함을 알고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만족도 평균					

Q.	우리	하교급신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야를	하 가지마	· 콬라주세 9 ( `
----	----	--------	--------	--------	-------	--------------

(1)	급식	양(많다/적다)
	무첨	가등)

② 건강한 급식의 맛(천연재료 사용, L-글루탐산나트륨

3	채소	반찬	많이	제	곳

④ 고기류(쇠고기, 닭고기, 햄, 소제지 등) 반찬 부족

(5)	7)1	타(	의	겨음	- ス	[접	써글	주세	Ö	):

10. 식생활과 관련하여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을 모두 골라주세요. ( )

- ① 나의 건강과 영양소 ② 비만 ③ 편식 ④ 밥상머리교육(식사예절)
- ⑤ 건강 음식 만들기 ⑥ 바른먹거리(친환경식재료등) ⑦음식물쓰레기와 환경보호
- ⑧ 기타(의견을 직접 써주세요):

### 【붙임 2】 학부모용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견해는 학교급식 품질향상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 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내용은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 본 조사는 자녀의 점심급식을 대상으로만 응	수답해	수세요.
---------------------------	-----	------

※ 본 조사는 자녀의 점심급식을 대상으로만 응답해 주세요.					
※ 다음 각 내용을 읽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또는 "만족하다"에 해당되는 정도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표 하여 주십시오.	5	4	3	2	1
1. 우리 학교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건강한 식사이다.					
2. 우리 학교는 3無(잔류농약, 방사능, GMO) 급식의 실천을 통해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3. 우리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된다.					
4. 우리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 가정통신, 학교급식 모니터링제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ol> <li>우리 학교는 올바른 식사와 배식지도 관해 선생님이나 영양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신다.</li> </ol>					
6. 우리학교 급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만족도 평균					
7. 우리 학교의 급식과 관련하여 칭찬하고 싶은 내용, 건의하고 싶은 내 요.	용이 9	있으면	자유톱	롭게 적역	어주세